

## < 수시 공시 >

2011.06.15.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 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제 3 항 제 5 호에 의거, 당사에서 운용 중인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며,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(투자신탁의 해지)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### 1. 해당 집합투자기구 및 내역

| 구분 | 집합투자기구 명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생일<br>설정잔액(원) | 발생일<br>순자산총액(원) | 기준가격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1  | 신영엠브렐러공사채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<br>제 1 호(채권)  | 1,000,000      | 1,009,287       | 1009.29 |
| 2  | 신영엠브렐러국공채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<br>제 1 호(채권)  | 1,000,000      | 1,000,163       | 1000.16 |
| 3  | 신영엠브렐러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<br>제 1 호(채권혼합)   | 1,000,000      | 1,001,764       | 1001.76 |
| 4  | 신영엠브렐러코스닥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<br>제 1 호(주식)  | 1,000,000      | 1,005,918       | 1005.92 |
| 5  | 신영엠브렐러중소형주 증권 전환형<br>투자신탁 제 1 호(주식) | 1,500,000      | 1,508,845       | 1005.90 |
| 6  | 신영엠브렐러대형주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<br>제 1 호(주식)  | 1,000,000      | 1,005,051       | 1005.05 |

2. 공시 사유 : 소규모펀드(1개월)

3. 발생 일자 : 2011.06.14.

4.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  
(<http://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